

울산지방법원 2020. 9. 18 선고 2019가단13109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권

변론 종결 2020. 8. 21.

판결 선고 2020. 9. 18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73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피고는 울산 남구 C 토지 및 D 토지 지상의 피고 소유 건물 1층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목적으로 'E'이라는 명칭의 어린이집(변경 후 명칭 : F 어린이집, 이하 '이 사건 어린이집'이라 한다)을 설치하였다.

나. 1) 원고는 1999. 3. 5.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,000만 원, 월 임료 20만 원에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.

2) 원고는 2005. 3. 17.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"사업자등록번호: G, 상호: F 어린이집, 개업일: 2005. 1. 1."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.

3)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여러 차례 갱신되었고, 원고와 피고는 2012. 6. 24.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특약사항으로 "어린이집 허가권 및 모든 권리는 H교회에 있으며, 그러나 사고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은 없다"라는 내용을 정하였다.

4) 원고와 피고는 2015. 6. 2. 임대차보증금 4,300만 원, 월 임료 145만 원, 임대차기간 2017. 12. 1.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(이하 여러 차례 갱신된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을 통틀어서 '이 사건 임대차계약'이라 한다).

5) 원고는 피고에게, 2017. 11. 1. 이 사건 임대차계약만료일에 새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. 원고는 2018. 1. 2. 이 사건 어린이집 소재지 변경인가를 받아 울산 남구 I 소재 건물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.

다. 1) 피고는 2017. 12. 27.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5730호로 이 사건 어린이집운영자변경동의의 소를 제기하였다. 이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은 2018. 8. 8. '이 사건 어린이집 인가증상의 대표자 명의는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기 보다는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관계에 수반하여 임대차 존속기간 동안만 이전되었던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'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'원고는 피고에게, 피고가 J F 어린이집(민간어린이집)에 대한 어린이집 인가증 상의 대표자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신청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의사표시(이하 '이 사건 동의 의사표시'라 한다)를 하라'는 판결을 선고하였다.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18나55817호로 항소하여 2019. 8. 28. 위 법원으로부터 '원고는 피고로부터 잔존 임대차보증금 30,799,82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, 원고에게 이 사건 동의

의사표시를 하라'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2) 원고는 2018. 6. 5.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12932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. 12. 1.로 만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원상복구 비용 88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,42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2019. 7. 10. 위 법원으로부터 '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동의 의사표시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 30,799,826원을 지급하라'는 판결을 선고받았다.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. 9. 23.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.

3) 원고는 2019년 9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동의 의사표시를 한다는 뜻이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위 1.의 다.항 기재 판결들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인정이 된다면,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임대하여 월 임료를 받은 것은 임료를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불법이다.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료의 합계 1억 7,300만 원 상당은 부당이득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내용은,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피고에게 임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그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위 어린이집 인가증상의 대표자 명의를 원고로 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, 이러한 계약이 영유아보육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위반된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.

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강경숙